

200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

농림부

■ 식량정책국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농업용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확대,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시기 및 사용시한 조정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사용량 2만ℓ 이상, 면세유류구입권 발급시기는 분기별, 시용시한은 2개월로 하고 있음	농업용 면세유류 거래투명성 확보 및 부당사용 예방을 위해 면세유류 구매 전용카드 의무사용 대상자를 직전연도 사용량 2만ℓ 이상에서 1만ℓ 이상으로 확대하고,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시기를 분기별 발급에서 월별발급으로 개선하고, 사용시한을 2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	농·축산·인·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 세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2005.10.1)	농업기술지원과 (500-1791) ※국무회의상정 (2005.6.20)

■ 축산국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 강화	외국에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면허를 받은 경우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그 나라의 수의사 면허를 받는 경우에만 국내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	수의사법 제9조 (2005.12.1)	가축방역과 (500-1934)
공수의 위촉 및 지도·감독 업무 이양	시·도지사가 공수의 위촉 및 지도·감독 업무수행	시장·군수가 공수의 위촉 및 지도·감독 업무수행	수의사법 제21조 (2005.12.1)	가축방역과 (500-1934)
수의사·동물 병원에 대한 지도·명령권 한 조정	농림부장관이 수의사·동물병원에 대하여 기구·장비의 대국민 지원을 명할 수 있음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수의사·동물병원에 대하여 기구·장비의 대국민 지원을 명할 수 있음	수의사법 제27조 (2005.12.1)	가축방역과 (500-1934)

2005년 7월부터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제'가 도입되며, 농업용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의무사용 대상자가 확대되고,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요건 강화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을 발표했다(2005. 6월 현재 관계법 제·개정 등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주요 정책 세부 내용>

1. 농업용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확대,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시기 및 사용시한 조정

- 2005년 10월부터 농업인에게 공급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류와 관련하여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면세유류 부당사용예방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현행 직전연도 2만ℓ 이상 사용 농업인은 농업용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로만 면세유류 구입토록 되어 있으나, 면세유류의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대상자를 1만ℓ 이상으로 확대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면세유류구입권 발급시기를 분기별 발급에서 월별발급으로, 면세유류 사용시한을 2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여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당사용 예방하여 부당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실제농업에 필요한 양만큼 농가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농업용 면세유류의 거래투명성 확보 및 부당사용 예방으로 농업용 면세유류가 농업용 목적으로만 사용됨으로써 농가의 영농경영비 경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2)500-1791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

2.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 강화

- 2005년 12월부터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이 강화됩니다.
 - 1998년에 국내 수의학제를 선진국 수준인 6년제로 개편하였으나, 이수 과목수·시간 등이 국내 대학보다 월등히 적은 외국대학의 졸업생에게도 동일하게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입니다.
 - 현재는 외국에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면허를 받은 경우 그 대학의 학제에 관계없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2005년 12월부터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그 나라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국내 수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을 강화하여 국내대학 졸업생과 대등한 학력을 갖춘 자만 시험에 응시하게 함으로써 국내 수의인력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

※(02)500-1934 농림부 가축방역과